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5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1.

발 의 자 : 소병훈 · 안태준 · 허성무
권향엽 · 박용갑 · 허영
박정 · 이춘석 · 서영석
강준현 · 박지원 · 권칠승
이개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·면·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학부모와 유동 인구가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유력한 홍보 장소로 활용되면서 다수의 후보자 현수막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 보도나 교차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임. 특히 성인에 비해 키가 작은 어린이의 시선에서는 현수막이 도로와 차량을 완전히 가리고, 운전자 역시 현수막에 가려진 저학년 어린이를 식별하기 어려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이 심각하게 증대되고 있음.

이에 선거운동 현수막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하단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.5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현수막으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

제67조제3항 신설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의 현수막을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.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7조(현수막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7조(현수막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1항의 현수막을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.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</u>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